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20.7.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나. 지역화폐의 발행 형태,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 법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기준을 100분의 60으로 정함(안 제8조).
- 바.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개인당 할인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0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3일

발의의원 : 이상복,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김명철,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20.7.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나. 지역화폐의 발행 형태,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 법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기준을 100분의 60으로 정함(안 제8조).
- 바.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개인당 할인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현행조례 전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산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오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 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카드형의 경우 제1호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4.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오산 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협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 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대표자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⑦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의 잔액은 시로 귀속한다.

제9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하며, 사용자당 할인의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할인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에 대하여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 ③ 지역화폐 출시기념, 명절, 축제,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확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당 할인의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의 신청·발급 등 운영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6. 각종 불편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제11조(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제4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오산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근거) 본 약정은 오산시장(이하 '시장')과 △△은행○○시지부장(이하 '△△') 사이에 체결한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취급에 관한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목적) 본 약정은 시장과 △△간에 시장이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및 대금 지급 업무 취급을 위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이 대행하는 지역화폐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와 같다

1. 제작된 지역화폐의 보관
2. 지역화폐의 판매
3. 지역화폐의 환전 및 환전된 지역화폐의 대금 지급
4.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에 따른 수수료 지급
5. 기타 시장과 △△이 합의한 사항

제4조(사무소) 제3조의 업무를 대행 취급하는 사무소는 시장과 △△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무소로 한다.

제5조(계좌개설) ① 시장은 △△이 정하는 사무소에 지역화폐 판매액의 입금 및 환전된 지역화폐의 대금 지급에 필요한 지역화폐 전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다.

② △△은 지역화폐 판매액을 지역화폐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역화폐 환전 시 지역화폐 전용계좌에서 시장의 인감 없이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역화폐 관리) ① △△은 시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지역화폐를 보관 및 판매 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역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은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관리·정산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할인율) ①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6%로 하며 시장이 필요한 경우 10%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에게 ○일전에 통보한다.

제8조(지역화폐 대행수수료)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시에서 복지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되지 않으며 구입은 △△에서 구매한다)

제9조(정산)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 및 환전에 따른 할인율 정산은 매월 말 기준으로 △△이 시장에게 청구하면 시장은 △△에게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지역화폐 환전대금의 지급) ① △△은 지역화폐 취급 가맹점이 아닌 개인의 지역화폐 환전 요구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단, 손상(훼손) 지역화폐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지역화폐의 폐기) ① △△은 대금 결제가 끝난 환전 지역화폐가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도록 천공 등 일정한 표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통된 지역화폐가 환전되었을 경우에는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고 폐기조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역화폐 위·변조에 대한 조치) △△은 지역화폐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업무협조) ① △△이 지역화폐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화폐 판매업무의 처리는 △△과 시장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기간) ① 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과 △△의 어느 일방이 해약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오산시금고 업무취급에 관한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이 되면 본 약정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오산시와 △△의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오산시와 △△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에 의문점 또는 문제점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오산시와 △△ 쌍방 합의에 의하며, 합의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약정의 해지 시 보관중인 지역화폐는 오산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은행(판매대행점)○○시지부장 (인)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

								년 월 분	
권 종	인 수		판 매		환 전		재 고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오산시장 귀하

(앞면)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 : 휴대폰 :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p>「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오산시장 귀하</p>				
첨부서류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오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및 내용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지역화폐가맹점 등록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판매대행점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오산지역화폐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산지역화폐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오산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오산지역화폐(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상기 본인은 오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장 귀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오산시가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를 오산지역화폐 소지자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유통함에 있어 오산시장과 등록된 가맹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등록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 상호 기명 날인한 후 시장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오산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본 계약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와 계약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해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취소와 책임)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4.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6.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역화폐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실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지역화폐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지역화폐
2.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가맹점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에서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환전청구서와 함께 시장이 지정한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지역화폐의 환전은 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확

인 및 입금 의뢰 절차를 거쳐 영업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이 때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경기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은 월 1천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10조(성신행 및 업무협조) ① 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시장이 지역화폐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오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오산시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대표자 : 오산시장 (인)

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오산 - 제 호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성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오산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오산 - 제 호)

신청인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재 지	
	사 업 장 전화번호			휴 대 폰 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오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오산시장 귀하</p>					
첨부서류	1.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지정서 1부 2. 오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

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6호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발행자인 오산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2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종이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전자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판매대금은 오산시로 귀속한다.

④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오산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 판매·환전 수수료,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 지역화폐 시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계약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9. 3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행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오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를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의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0>

③ 지역화폐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④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1. 설·추석 명절 :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 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공연, 전시회 및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하나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 9.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협의회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의 장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이 불성실, 비밀누설, 건강 등 개인적 사정, 그 밖의 협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

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종이지역화폐의 유통

제20조(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

제23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 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